2020년도 제7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o 일 시: 2020. 5. 11.(월요일), 10:30
- o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o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백대용(분과위원장), 박재화, 오영주, 최현용 위원
-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0-68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4. 폐회선언분과위원장

Ⅱ.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 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978건(안건번호 제2020-20192호~22227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0-20192호는 블로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을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20193호~20215호는 웹하드에서 출판, 만화, 영상, 음악 저작물을 판매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 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20216호는 밴드에서 출판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사 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20217호는 안건번호 제2020-20218호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에 대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0-20218호는 영상물 없이 게시자가 직접 번역한 것으로 보이는 우리말 자막파일만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에 영리 목적이 없는 점, 게시자가 직접 우리말로 번역하였고 이러한 번역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0-20219호, 20220호는 일본 만화 게시물에 대한 사안

임. 게시자가 만화 한 화 전체 분량을 올린 점을 고려하면 공정이용이나 인용에 해당될 여지는 거의 없고, 불법복제물의 게시는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20221호~20231호는 웹하드 사이트 이용자가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임. 복제·전송자가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이상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3,933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o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 주요내용: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명령을 청구한 175건(안건번호 제2020-2024호~2198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0-2024호~2198호는 청구인이 제출한 영문 확인서 등 소명자료에 작성일자, 작성명의인 및 직위 등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o 백대용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74회 저작권보호심 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0-68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제1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6쪽의 게시물 제목, 6쪽~8쪽의 저작물명, 8쪽~9쪽의 워터마크, 9쪽의 게시물 내용, 9쪽~10쪽의 댓글 내용, 10쪽의 OSP명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제2호 안건인 정보 제공 청구 심의에 대한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5쪽~37쪽까지는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함.

제3호 안건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에 대한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제7조 제1항 제2호와 제5호에 따라 38쪽~45쪽까지는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해당 두 안건에 대한 공개여부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위원: 제1호 안건의 해당 부분은 비식별 처리함이 타당함.
- 백대용 위원: 같은 생각임. 제2호 안건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최현용 위원: 동의함. 제3호 안건의 경우에는 해당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게 되므로 비공 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오영주 위원: 제2호 안건과 제3호 안건 회의록은 해당 쪽수를 표기 하면 될 것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게시물 제목, 저작물명, 워터마크, 게시물 내용, 댓글 내용, OSP명은 비식별 처리함. 정보제공청구 심의 회의 부분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5쪽~37쪽은 비공개하기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회의 부분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제7조 제1항 제2호와 제5호에 따라 38쪽~45쪽은 비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건상정

-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위원님들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박재화, 오영주, 최현용 위원: 제척 사유 해당 없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금일 심의대상은 안건번호 제2020-20192호~22227호 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3,978건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 보고로 갈음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20192호 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민원 신고 내용을 보여주면서)민원인은 46개 URL을 특정하여 신고 하였는데 심의대상 게시물을 제외한 나머지 게시물들은 보호원 자체 모니터링으로 이미 심의 요청된 상태임. 나머지 게시물들은 다른 분 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임.

(안건번호 제2020-20192호가 제공되고 있는 URL에 접속하여 영상물을 재생하면서)블로그에서 2019. 4. 21. 일본 애니메이션 '○○○' ●

●●●를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의 제목에는 '한글자막'이라 작성되어 있으나 영상물에서 자막이 확인되지 않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참고로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하는 영상물 '○○○'는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21기는 2018. 10. 7.부터 2019. 6. 30.까지 일본 ◎◎◎◎에서 방영됨.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20-20192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최현용 위원: 타인의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음.
- 오영주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박재화 위원: 동의함. 일본 저작물도 우리나라 저작물과 동일한 수준 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가결 의견임.
- 백대용 위원: 같은 생각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20192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20193호~20215호는 실명의 민원인 3인, 익명의 민원인 1인이 웹하드 사이트에서 불법복제물을 판매하는 게시물을 신고한건임. 안건번호 제2020-20193호~20199호는 출판저작물, 안건번호 제2020-20200호~20207호는 만화저작물, 안건번호 제2020-20208호~20212호는 영상저작물, 안건번호 제2020-20213호~20215호는 음악저작물을 각각 판매한 사안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20-20193호~20215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최현용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영리 등을 목적으로 저작 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가결함이 마땅함.
- 박재화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오영주 위원: 같은 의견임.

- 백대용 위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 정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20193호~20215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20216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 'Ш□□□□□□□', '■■■■', '△△△△△△△'의 텍스트 파일과 '▲▲▲▲▲▲'의 전자책 파일을 게시함. 심의대상 게시물에서제공하는 저작물은 모두 판매 중임.

참고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존재하는 밴드는 회원 수가 2020. 4. 29. 기준으로 1,000명이며, 누구나 밴드를 검색해 찾을 수 있고, 게시물을 볼 수 있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20-20216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최현용 위원: 누구나 게시물을 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블로그 게 시물과 달리 볼 이유가 없어 보임.
- 백대용 위원: 동의함. 기존에도 심의위원회는 밴드명만 보더라도 불 법복제물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보이는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권고하였음.
- 오영주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박재화 위원: 모두 시중에 판매 중인 저작물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20216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20217호, 20218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이 블로그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게시물에 대해 다른 분과위원회에서도 논의한 바 있음.

(토렌트 파일을 제공하는 웹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클릭하면서) 토렌트 파일을 제공하는 웹페이지는 현재 연결되지 아니하여 불법 복제물 전송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자막 파일을 제공하는 웹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클릭하면서)안 건번호 제2020-20218호는 안건번호 제2020-20217호의 링크를 클릭하면 연결되는 게시물임. '◀◀◀◀◀'가 2016. 10. 1. 일본 애니메이션 '▼▼▼' 1화부터 13화까지의 smi 자막파일을 올림. 심의대상 게시물에는 광고가 없음. 심의대상 게시물 본문에 "▶▶▶▶▶▶▶▶▶▶▶▶▶▶▶▶▶▶▶▶▶▶

우리 심의위원회는 지난 심의에서 동영상 없이 자막만 제공하는 경우 사안별로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정권고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참고로 해당 일본 애니메이션은 2016. 7. 4.부터 2016. 9. 26.까지 일본 ♡♡♡에서 총 13부작으로 방영되었음. 국내에서는 2017. 5. 15. '♥♥♥♥'에서 방영되었고, 현재 '♥♥♥♥' 유튜브 채널에 해당 저작물 전편이 게시되어 있음.

(유튜브 채널에서 해당 영상물을 재생하면서)합법저작물을 이용하려면 광고를 봐야 함.

- 최현용 위원: 안건번호 제2020-20218호 해당 블로그의 카테고리를 보면 다 자막파일만 제공하고 있음. 게시자가 직접 번역한 자막파일만 제공하는 것으로 보임.
- 오영주 위원: 해당 블로그의 규모나 성격에 비춰보았을 때 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최현용 위원: 유튜브 채널에서 제공하고 있는 영상물은 자막파일이 없는 더빙 버전인 것으로 확인됨. 자막파일을 구하는 이용자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안은 공정이용에 해당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20-20217호, 20218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오영주 위원: 안건번호 제2020-20218호 해당 사이트에서 영상 없이 자막파일만 게시한 점, 해당 사이트의 규모 등에 비추어 시정권고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박재화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 영리 목적이 없고, 저작권자가 아닌 제3자가 민원을 제기하였으므로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삼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 백대용 위원: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또한 안건번호 제2020-20217 호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최현용 위원: 같은 생각임. 안건번호 제2020-20217호 심의대상 게시 물은 단순 링크를 제공하고 있고, 부결함이 타당해 보이는 안건번호 제2020-20218호를 링크하고 있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20217호, 20218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20219호, 20220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 (안건번호 제2020-20219호가 제공되고 있는 URL에 접속하여 게시물을 보여주면서)안건번호 제2020-20219호는 커뮤니티 사이트 이용자가 2018. 11. 25. 일본 만화 '융융융융융융융융융) 번역본을 게시한사안임. 해당 만화 한 화 전체분량을 제공하고 있음. 해당 일본 만화는 2018. 1.부터 '학산문화사'에서 단행본으로 발간하고 있음. 제목

에 "번역", 본문에 "♣♣♣♣♣♣♣♣♣♣♣♣♣♣♣♣♣♣♣♣ ♣♣", "◉◉◉◉◉◉◉◉◉◉◉◎°라는 표현에 비추어 보아 게시자 가 직접 우리말로 번역하였을 가능성이 큼.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20-20219호, 20220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오영주 위원: 만화 한 화 전체분량을 올린 점을 고려하면 공정이용 이나 인용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 백대용 위원: 불법복제물 게시를 통하여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 최현용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음.
- 박재화 위원: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20219호, 20220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20221호~20231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웹하드 사이트 이용자가 어도비사의 'Acrobat', 마이크로소프트사의 'MS Office', 한글과컴퓨터사의 '한컴오피스', 오토데스크사의 'AutoCAD' 등의 상업용 소프트웨어 복제물을 판매한 총 14건 게시물에 대한 사안임.

안건번호 제2020-20221호~20231호 소프트웨어 복제물들은 자동인증, 크랙파일 또는 시리얼 넘버 등을 제공하고 있음.

컴퓨터 프로그램의 권리자들은 각 홈페이지에서 1개월 무료 체험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복제물이 정품 프로그램 또는 각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체험용 프로그램과 완전히 동일한 복제물인지 여 부는 확인되지 아니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20-20221호~20231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박재화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 백대용 위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 오영주 위원: 복제·전송자가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이상 심의대상 게시물은 복제권, 공중송신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수 있음.

- 최현용 위원: 같은 의견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20221호~20231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20232호~22227호는 웹하드 등 사이트를 통해서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임.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들을 확인해주시기 바람.
 - (영화 '사냥의 시간'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20232 호는 '넷플릭스'에서 2020. 4. 23. 공개된 영화를 웹하드 사이트 '도도파일'에서 187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 (영화 '사냥의 시간'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20406 호는 안건번호 제2020-20232호와 동일한 영화를 웹하드 사이트 '위디스크'에서 310 캐시에 판매한 사안임.
 - (영화 '사냥의 시간'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20471 호는 안건번호 제2020-20232호와 동일한 영화를 웹하드 사이트 '파일구리(웹하드)'에서 35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 (영화 '사냥의 시간'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20640 호는 안건번호 제2020-20232호와 동일한 영화를 웹하드 사이트 '피디팝'에서 27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 (영화 '1917'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21069호는 2020. 2. 19. 개봉한 영화를 웹하드에서 186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2020. 5. 8. 현재 상영 중임. 해당 영화는 2020. 3. 31. 극장동시 VOD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해당 영상물에는 우리말 자막이 포함되어 있음. 자체 자막인 것으로 보임.

(영화 '인비저블맨'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21323호는 2020. 2. 26. 개봉한 영화를 웹하드에서 37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2020. 5. 8. 현재 상영 중임. 해당 영화는 2020. 3. 20. VOD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영화 '비밀정보원: 인 더 프리즌'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21388호는 2020. 4. 15. 개봉한 영화를 웹하드에서 186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2020. 5. 8. 현재 상영 중임. 해당 영화는 '네이버 시리즈on'에서 10,000원에 구매 가능함. 해당 영상물에는 자체 번역한 것으로 보이는 자막이 포함되어 있음.

(방송 '슬기로운 의사생활'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20-22020호는 블로그에서 '슬기로운 의사생활 1화' 1시간 22분 40 초 분량을 제공한 사안임. 해당 방송물은 tvN 채널에서 2020. 3. 12. 부터 목요일 오후 9시에 방영 중인 총 12부작 드라마임.

(안건번호 제2020-22020호가 제공되고 있는 URL에 접속하여 영상물을 재생하면서)해당 블로그는 이미 다른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바 있음.

(게시판 목록을 제시하면서)해당 블로그 이용자는 드라마뿐만 아니라 뉴스, 스포츠 경기 등 다양한 방송물을 제공하고 있음.

(활동정보를 제시하면서)해당 블로그의 이웃은 총 227명임. 오늘 방문자 수는 93명이고, 총 방문자 수는 111,188명임.

(게임 '그랑블루 판타지: Versus'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20-22122호는 2020. 2. 6. 출시된 게임물을 웹하드에서 660 캐시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게임물의 정품 판매가는 약 64,800원이고, 배급사는 '사이게임즈', '세가 게임스'임.

(게임 '원피스 해적무쌍 4'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20-22124호는 2020. 3. 26. 출시된 게임물을 웹하드에서 1,000 캐시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게임물의 정품 판매가는 약 64,800원이고, 배급사는 '반다이 남코 엔터테인먼트'임.

(만화 '교토 담배가게 요리코 (출판 : 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22219호는 웹하드에서 만화 '교토 담배가게 요리코 1~24화' 압축 파일을 1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어문저작물은 2019. 2. 22. 출간되었고, 총 30화로 미완결임. 합법저작물단권 판매가는 약 3,000원임. 해당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jpg 파일로 이용 가능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20-20232호~22227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백대용 위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 공한 사안임.
- 오영주 위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 정됨.
- 박재화 위원: 다만 이미 삭제되었거나 전송이 중단된 경우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최현용 위원: 동의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20232호~22227호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조치 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 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20217호, 20218호는 부결함. 그 밖에 안건번호 제2020-20192호~20216호, 제2020-20219호~22227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o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제2호 안건에 관한 회의록 17면부터 20면까지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결정함.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건번호 제2020-2024호~2198호는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작성일자, 작성명의인 및 직위 등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차기 심의위원회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함."

4. 폐회 선언

o 백대용 분과위원장이 제7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7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5. 18.

분과위원장 백대용

위원 박재화

위원 오영주

위원 최현용